

『歷史學研究』 발간규정

1987. 3.14 제정

2001.12.21 개정

2005.12. 9

2006.12. 9

2011. 1. 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호남사학회의 학회지인 『역사학연구』(이하 학회지라고 약칭)를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다. 저자의 저작권 사용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가능하다.

제3조 (투고 자격)

원고를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회원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필자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게재 원고)

- ① 호남의 역사 관련 학술 논문
- ② 한국사·동양사·서양사 관련 학술 논문
- ③ 역사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학 관련 타 분야의 학술 논문
- ④ 비평논문·논단·연구동향·학술정보·서평 등 본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원고

제5조 (학회지 발행)

- ① 학회지는 연4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간행일자는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 ②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필자에게는 별쇄본을 제작하여 증정한다.

제6조 (투고 원칙)

- ① 다른 출판물에 이미 발표된 글은 투고할 수 없다.
- ②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일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③ 저자의 성명은 소속과 함께 표기한다.
- ④ 논문에는 반드시 국문 초록과 외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 ⑤ 논문에는 5-9개의 한글 및 영문 주제어(Key Word)를 표기한다.
- ⑥ 참고문헌: 논문의 마지막에 인용한 자료를 정리하여 순서대로 수록한다.
- ⑦ 투고 원고의 매수는 각주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제한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추가 경비를 투고자에게 부담시킨다(본문 1쪽 당 1만원). 그리고 투고와 동시에 호남사학회 계좌로 심사

료(5만원)를 지불해야한다.

- ⑧ 투고자는 학회가 별도로 규정한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원고를 디스켓 또는 이메일로 호남사학회 편집이사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⑨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학회지의 발행일로부터 40일 전까지 제출된 논문을 해당 간기의 심사 대상으로 한다. 원고 투고 접수는 간기마다 10편 내외로 제한한다.
- ⑩ 게재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일반 논문 15만원, 연구비 수령 논문 3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단 서평 등 편집위원회에서 청탁한 원고는 예외로 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

- ① 학회지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편집위원장을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전국적 분포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연구 업적이 우수한 역사학 전공교수 8인 내외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연구논문에 대한 심사;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 및 처리;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기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 ⑥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해 연 4회 소집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 ⑦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유사시 편집위원장의 직무는 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 ⑧ 편집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동수의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논문 심사)

-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에게 위촉된다. 부득이한 경우 인접분야 연구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이어야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논문의 체제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논문의 체제 평가에는 논문 체제와 논리의 일관성(15점), 논문 구성의 적절성(15점)이 포함되며, 논문의 내용 평가에는 논문의 전문성(15점), 기존 연구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15점), 자료 활용의 타당성(15점), 용어 및 개념의 정확성(15점)이 포함된다. 그리고 기타 문제점 및 수정사항(10점)을 지적한다.
- ③ 심사위원은 게재(A: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불가(D: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④ 수정 및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는 물론, 위의 정량평가가 B 이상임에도 수정후 재심사나 게재불가를 판정해야 할 경우에 특히, 심사위원은 판

정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한다.
- ⑥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9조 (게재 판정)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심사결과			판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A	A	A	게재
A	A	B	
A	A	C	
A	B	B	수정후 게재
A	B	C	
B	B	B	
B	B	C	
A	A	D	
A	B	D	
A	C	C	수정후 재투고
A	C	D	
B	B	D	
B	C	C	
C	C	C	
A	D	D	
B	C	D	게재불가
B	D	D	
C	C	D	
C	D	D	
D	D	D	

제10조 (심사결과)

- ①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원칙적으로 수정 없이 게재될 수 있다. 그러나 편집위원회는 판정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전제로 게재될 수 있다.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통해 게재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③ ‘수정후 재투고’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전제로 다음 간기에 재투고 할 수 있다.
- ④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지에 실릴 수 없다.

제11조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

논문의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 저작권(복사권·전송권)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복사권·전송권)의 수입은 연구소에 귀속된다.

제1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3조 본 규정은 201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호남사학회 연구윤리규정

2007.10.10 제정

2007.12. 7 개정

2008. 5.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남사학회의 연구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들 대상으로 적용한다.

- (1) 본 학회에서 주관·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자
- (2)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역사학연구』의 투고원고(논문·설립·서평 및 자료의 해제·정리 등)
- (3) 본 학회의 명의로 수수·발주한 연구프로젝트의 참여자(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

제3조(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본 학회에서 주관·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
- (2)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역사학연구』의 투고원고(논문·설립·서평 및 자료의 해제·정리 등)

제4조(개념)

연구자의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논저의 내용을 허위로 활용한 경우
- (2) 변조: 기존 자료나 논저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
- (3) 표절: 기존 논저의 내용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도용한 경우
- (4) 대필: 타인이 집필한 원고를 본인의 명의로 발표한 경우
- (5) 복제: 기존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석사논문의 전부 또는 박사논문의 일부를 전재하는 경우 포함)
- (6) 기타: 본인이 집필하지 않은 논문에 공동저자로 명의를 올리거나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진·그림 등 자료를 싣는 등 연구자의 윤리성에 저촉되는 행위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구성)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총 9인).

- (1) 위원장(1인): 학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 (2) 위 원(8인): 학회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지역이사 제외).
- (3) 분과장(2인): 위원 중 2인의 분과장을 선임한다.
 - ① 연구분과: 학회 연구이사를 선임하며, 월례발표회 및 학술회의·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부정행위 여부의 조사를 맡는다.
 - ② 편집분과: 학회 편집이사를 선임하며, 학술지 『역사학연구』에 투고 또는 발표된 논문의 부정행위 여부의 조사를 맡는다.
- (4) 간 사(1인):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원 중 1인을 선임한다.
- (5) 자문위원: 연구활동의 부정행위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학회 내·외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임명)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 (1) 위원장 및 위원은 호남사학회의 회장 및 이사들이 겸임한다.
- (2)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임명한다.
- (3) 위원장이나 위원이 임기 도중에 교체될 경우, 학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7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분과장 포함)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2) 위 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3) 분과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장이나 위원(분과장 포함)이 임기 도중에 교체되어 새로 선임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제8조(소집)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학술지 간행 이전 투고원고 심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 (2) 학술지 간행 이후 수록원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 (3) 월례학술회의 및 정기학술대회 개최 전후 발표원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 (4) 학회 명의로 발주·수주한 프로젝트의 원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제9조(회의)

윤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위임장 제출자 포함).

제10조(조사)

윤리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이 부정행위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협의하여 참석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사대상이라고 결의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시행한다.

- (1) 학술지의 투고 또는 수록된 원고가 대상일 경우 편집분과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2)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분과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1조(소명)

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

- (1) 해당 연구자는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필요에 따라 연구자가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12조(판정)

윤리위원회에서는 본과의 조사보고서와 해당 연구자의 소명서를 참고하여 참석자 ⅔ 이상의 찬성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제13조(통고)

윤리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연구자에게 통고한다.

제14조(제재)

부정행위로 결의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 (1) 발표 또는 수록 이전인 경우 발표와 수락을 취소하고 3년간 해당 연구자의 학회 연구활동 참여를 제한한다.
- (2) 발표 또는 수록 이후인 경우 5년간 해당 연구자의 학회 연구활동 참여를 제한하며, 피해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나 학술지에 사과문을 게재한다.
- (3) 부정행위로 판정받지 않은 연구자라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한시적으로 학회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歷史學研究』원고작성법

1987. 3.14 제정
2001.12.21 개정
2005.12. 9
2006.12. 9
2011. 1. 6
2018. 8.31

I. 일반원칙

1. 범위: 한국사·동양사·서양사·역사이론 등 역사학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 인접 학문 분야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2. 종류: 연구논문·비평논문·논단·서평·자료소개 등을 투고할 수 있다.
3. 자격: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단, 비회원인 경우 가입 후 투고 가능하다.
4. 분량: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비평논문과 논단은 100매 내외, 그리고 서평과 자료소개는 30매를 기준으로 한다.
5. 작성: 한글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한다.
6. 저자: 공동저자일 경우, 제1저자와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한다.
7. 목차: 논문의 목차는 머리말(혹은 서론, 서언 등)과 맺음말(혹은 결론)을 포함하여 로마자(I, II, III……)로 표기하고, 그 이하의 목차는 1, 2, 3…; 1), 2), 3)…; ①, ②, ③… 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초록: 원고 제출시 A4용지 1장 분량의 국문 및 외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9. 주제어: 원고 제출시 국문 및 외국어로 된 5-9개의 주제어(key word)를 첨부한다.
10. 참고문헌: 논문 끝부분에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의 목록을 첨부한다.
11. 저작권: 필자는 학회지에 실린 글의 일부 저작권(복사권·전송권)을 학회에 양도해야 하며, 그에 따른 수입은 학회에 귀속된다.

II. 각주 표기방식

1. 모든 주는 각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양어 서적의 경우
단행본, 신문, 잡지명은 『』(반각) 안에, 논문 및 기사제목은 「」(반각) 안에 표기한다. 출판 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는 ()안에 표기한다. 저자 이름과 논문 사이, 논문과 편저자 사이, 편저자와 서명 사이, 출판사와 출판년도, 출판년도와 쪽수 사이를 쉼표로 구분한다.
- 단행본: 저자이름, 『책, 신문, 잡지명』 권수 (출판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홍길동, 『홍길동전』 4 (서울, 2000), 20쪽.
- 논 문: 저자이름, 「논문, 기사제목」, 편저자 이름, 『단행본, 신문, 잡지명』 권수 (출판 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편저의 논문: 김삿갓, 「홍길동을 위한 시」, 홍길동 편, 『홍길동전』 4 (서울, 2000), 20-40쪽. 33쪽.
잡지의 논문: 김기섭, 「신라 촌락문서에 보이는 ‘村’의 입지와 개간」, 『역사와 경계』 42 (2002), 49-74쪽, 50쪽.
3. 서양어 서적의 경우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쓰고, 출판 장소, 출판사, 출판년도는 ()안에 표기한다. 저자 이름과 논문 사이, 논문과 편저자 사이, 편저자와 서명 사이, 출판사와 출판년도, 출판년도와 쪽수 사이를 쉼표로 구분한다.
- 단행본: 저자이름, “책, 신문, 잡지명” 권수 (출판장소: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원서의 경우: Gildong Hong, *Korean Cinema* 1 (Berlin: Berlin Books, 1900), 21.
역서의 경우: Gildong Hong, *Korean Cinema* 1 (Berlin: Berlin Books, 1900), 김삿갓 역, 『한국 의 영화』 (모래출판사, 2011). 30쪽.
- 논 문: 저자이름, “논문, 기사제목,” 편저자 이름, 단행본, 신문, 잡지명, 권수 (출판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편저의 논문: Satgat Kim, “A Poem for Gildong,” Gildong Hong(Ed.), *Korean Cinema* 1

(Berlin, 1900), 20-40, 33.

잡지의 논문: Michael D. Bailey, "A Late Medieval Crisis of Superstition," *Speculum* 24/3 (2009), 633-661, 656.

4. 출판장소와 출판사 이름은 동양서와 서양서 모두 필자의 편이에 따라 둘 다 쓰거나 둘 중 하나만을 쓸 수 있다. 논문의 경우 출판장소와 출판사 이름은 생략할 수 있다.
5. 쪽수 표기는 단행본의 경우 인용한 쪽수만 표시한다. 그러나 편저나 잡지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첫 번째의 인용에서는 논문이 게재되어있는 처음과 끝 쪽수를 기입한 후 인용한 쪽수를 표시한다. 두 번째부터는 인용한 쪽수만 표시한다.
6. 漢籍本 인용의 경우
가장 큰 책의 범주는 『』로 묶고, 하위는 「」를 쓰되, 다시 나눌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서지사항 표기는 위의 일반적인 표기법을 따라 판본을 밝혀 준다. 단, 판본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經書나 史料일 경우, 서명과 편명만을 기록할 수 있다.
- 판본을 밝혀줄 경우
→ 康廣仁, 『報易一盡』 『戊戌六君子集』 X期 (上海, 近代史資料集刊, 1992), p. 32.
→ 魏源, 『外藩·乾隆戡定回疆記』 『聖武記』 卷4 (北京, 中華書局, 1984), pp. 34~45.
→ 一然, 『三國遺事』 (瑞文文化社, 1996), 132쪽.
- 일반적인 경서나 사료일 경우
→ 『論語』 卷1, 學而.
→ 『英祖實錄』 卷51, 英祖 16年 6月 3日 壬申.
→ 『高麗史』 卷71, 志25, 樂, 俗樂, 翰林別曲.
7. 번역본의 경우, 번역된 현재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단, 필자의 필요에 따라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 줄 수 있다.
- 일반적인 표기
→ 蔣伯潛·蔣祖怡 共著/최석기·강정화 공역, 『유교경전과 경학』 (경인문화사, 2002).
→ 鹽野七生/김석희 역, 『르네상스의 여인』 (한길사, 1996), 56~70쪽.
→ 一然/이재호 역, 『三國遺事』 (솔, 1997), 124쪽.
- 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 줄 경우 헵표(.)를 사용한다.
→ E. J. Hobsbawm, *Nation and Nationalism since 1780*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1994), 100쪽.
8. 각주 내에서 서명을 인용할 경우, 인용대상을 제외한 부수적인 서지사항은 모두 괄호로 묶어서 처리한다. 불필요한 서지사항은 괄호 안에서 생략할 수 있다.
→ 대표적인 견해로는 田村實造(『均田制の系譜-均田法と計口受田との關係』 『史林』 45-6, 1962)와 王仲(『北魏初期社會性質與拓跋宏의均田』 『文史哲』 1955-10) 등이다.
9. 각주 내에서 괄호 안에 참고문헌을 달 경우는 해당 문장에 국한되는 경우에만 하고, 각주 전체의 내용일 경우 괄호를 묶지 않는다.
→ 13세기 몽고인들도 라시드 앗 딘의 『集史』(金浩東 역주, 『부족지』, 사계절, 2002, 252~253쪽)에서 그 祖上에 대해 鮮卑拓跋部가 森林속에서 살았던 것(『魏書』 卷1, 序紀)과 유사한 회상을 하고 있다. 朱學淵, 『鮮卑民族及其語言線索』 『文史』 54, 101~102쪽.
10. 같은 논문이 여러 차례 간행되었을 때 필자가 구분을 원할 경우, 콜론(:)을 사용해서 표기할 수 있다.
→ 이기백,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이대학보』 (이대사학회, 1958. 11.): 『민족과 역사』 (서울, 일조각, 1971, 新版 1995), 45쪽.
11. 여러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표기한다.
→ 고병익, 「전통의 의미」, 『동아시아의 전통』 (일조각, 1976); 조지훈, 「전통의 현대적 의미」, 『한국문화사서설』 (탐구신서, 1964); 박종홍, 「문화의 전승.섭취.창조」, 『사상계』 63 (1958. 10.)
12. 각주 속에서 인용문을 제시할 경우, 인용문을 겹따옴표(" ")로 묶어주고, 전거는 그 뒤에 부기한다.
→ 『齊朝一士大夫 嘗謂吾曰 '我有一兒 年已十七 頗曉書疏 教其鮮卑語及琵琶 稍欲通解 以此伏事公卿 無不寵愛 亦要事也' 吾時俛而不答. 異哉 此人之教子也! 若由此業 自致卿相 亦不願汝曹爲之.』 『教子2』, 『顏氏家訓』 卷1 (北京, 中華書局, 1993), 21쪽.
13. 신문과 같은 일간지는 연.월.일을 표기하되, 마침표(.)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 강만길, 「휴전선에 통일연구소를……」,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사, 2001. 1. 21.), 2면.
14. 문장이나 단어 등을 생략 혹은 줄일 경우는 말줄임표(……)를 이용해서 표시한다.
15. 각주에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拙稿'나 '筆者'로 표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해 준다.
16. 바로 앞에 나온 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 동양어 문헌의 경우는 '같은 논문' 또는 '같은 책'이라 표기하고, 서양어 문헌일 때는 'Ibid'로 표기한다. 쪽수가 같을 경우는 위와 같이 표기하고 마침표를 찍지

만, 쪽수가 다를 경우는 십표 다음에 쪽수를 적고 마친다.

17. 앞에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저자이름(서양문헌의 경우 성만 씀)과 간략한 제목을 적고 십표를 찍은 후 쪽수를 적고 마친다. ‘앞의 책’, ‘앞의 논문’, ‘op. cit.’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18. 필요한 경우 필자의 표기방식을 따르되, 논문 안에서 일관성을 지킨다.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역사학연구』의 관례에 따른다.

III. 인용 방식

1. 모든 인용문(漢文포함)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자로 된 인명, 지명, 사건명, 논저명의 경우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붙여 표기한다.
3. 본문 속에서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이어지는 인용문은 겹따옴표(“ ”)로 묶는다. 각주 속의 인용문도 이와 같다.
4. 겹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로 묶는다.
5.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로 묶으며, 인용자에 의해 강조되거나 변형된 인용구는 방점 또는 이탤릭체, 고딕체로 별도 처리한다. 단, 강조의 경우는 한 문장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표시를 한다.
6. 문단을 나누어 별도의 문장으로 인용할 때는 겹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한 줄을 띄우고 본문보다 한 포인트 작은 글자로 구분한다. 그리고 앞뒤로 각각 한줄 씩을 띄우고 왼쪽의 여백도 한 칸 들여쓰기로 한다. 출처는 필자의 편의에 따라 각주로 달거나 괄호 안에 넣는다.
7.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原典과 인용서를 최대한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8. 인용문 내에서는 마침표를 사용할 수 없다.
 - 伊川선생은 “顔回야말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이다.”라고 했으니…… (×)
 - 司馬遷은 “子賁만이 三年喪을 더하였다”고 하였다. (○)

IV. 참고문헌 표기방식

1.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을 적는다.
2.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하여 적는다.
3. 1차 자료와 2차 자료는 각각 동양어 문헌을 먼저 적고, 서양어 문헌은 나중에 적는다.
4. 1차 자료는 가나다 혹은 알파벳 순으로 적어야 하며, 그 외의 방식은 필자의 편의에 따라 일관성 있게 처리한다.
5. 2차 자료에서 단행본을 먼저 적고, 일반논문을 다음에 적는다. 학위논문은 일반논문에 포함시키며, 그 외의 자료는 필자의 판단대로 일관성을 유지하여 적는다.
6. 참고문헌 배열순서는 한국어 논저의 경우 저자 가나다순으로 한다. 일본인, 중국인의 이름은 한자의 한국식 발음 가나다순을 기준으로 한다. 서양서의 경우 저자 성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며, 기타 언어는 각 언어별로 관례를 따르도록 한다.
7. 참고문헌은 각주 표기방식에서 적은 문헌표기방식을 따른다. 단지 단행본의 경우 인용한 쪽수 표시는 할 필요가 없으며, 논문의 경우 전체 쪽수만 표기한다.

동양어 서적의 경우

- 단행본: 저자이름, 『책, 신문, 잡지명』 권수 (출판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
홍길동, 『홍길동전』 4 (서울, 2000).
- 논 문: 저자이름, 「논문, 기사제목」, 편저자 이름, 『단행본, 신문, 잡지명』 권수 (출판 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편저의 논문: 김삿갓, 「홍길동을 위한 시」, 홍길동 편, 『홍길동전』 4 (서울, 2000), 20-40쪽.
잡지의 논문: 김기섭, 「신라 촌락문서에 보이는 ‘村’의 입지와 개간」, 『역사와 경계』 42 (2002), 49-74쪽.

서양어 서적의 경우

- 단행본: 저자이름, “책, 신문, 잡지명” 권수 (출판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원서의 경우: Hong, Gildong, *Korean Cinema* 1 (Berlin, 1900).
- 논 문: 저자이름, “논문, 기사제목” 편저자 이름, 단행본, 신문, 잡지명, 권수 (출판장소 혹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역서의 경우: Hong, Gildong, *Korean Cinema* 1 (Berlin, 1900), 김삿갓 역, 『한국의 영화』 (모래 출판사, 2011).

편저의 논문: Kim, Satgat, "A Poem for Gildong," Gildong Hong(Ed.), *Korean Cinema* 1 (Berlin: Berlin Books, 1900), 20-40.

잡지의 논문: Bailey, Michael D., "A Late Medieval Crisis of Superstition," *Speculum* 24/3 (2009), 633-661.

8. 참고문헌 목차

참고문헌

1. 1차 사료

- 1) 동양어 문헌
- 2) 서양어 문헌

2. 2차 사료

- 1) 동양어 문헌
 - ① 단행본
 - ② 논문
 - ③ 기타
- 2) 서양어 문헌
 - ① 단행본
 - ② 논문
 - ③ 기타